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전 요소 구비의 원칙: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

3505 판결



## 1. 특허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비고
<p>(구성요소 1) 소정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컴퓨터인 사용자 컴퓨터, 상기 티켓을 발매하는 공연사의 컴퓨터인 공연사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티켓을 예매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으로서,</p>	<p>영화 티켓 정보 DB(90)를 구비한 포토 티켓 서버가 사용자 단말기, 관리자 컴퓨터 및 티켓 발권기와 연결되어 포토 티켓을 예매하고 발행하는 방법</p>	<p>동일</p>
<p>(구성요소 2) (a)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공연사 컴퓨터로부터 공연장소, 공연시간, 좌석번호, 티켓의 가격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판매할 티켓의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p>	<p>“영화 티켓 정보 관리부(40)는 관리자 컴퓨터(미도시)에 의해 입력되는 티켓 판매 대상 영화에 관한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가격, 대표 이미지 등)를 사전에 영화 티켓 정보 DB(90)에 저장” 하는 단계</p>	<p>동일</p>
<p>(구성요소 3)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p>	<p>대응 구성요소 없음</p>	
<p>(구성요소 4) (c)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을 받으면,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상기 사용자를 회원 가입시키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p>	<p>“인증 처리부(30)는 사용자 인증(회원 인증)을 처리한다. 사용자 단말기가 영화 티켓 예매를 위해 서버에 접속하면 인증부에 의한 사용자 인증을 거치게 되는데, 인증 처리부는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정보 DB의 정보와 대조하여 사용자 인증”하는 단계</p>	<p>동일</p>
<p>(구성요소 5) (d)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예매 가능한 티켓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p>	<p>“티켓 예매 처리부(50)는 영화 티켓 정보 DB(90)로부터 예매 가능한 영화 티켓 정보(상영관, 상영 시간, 가격, 대표 이미지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p>	<p>동일</p>

<p>터 상기 예매 가능한 티켓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받아 예매 처리하는 단계;</p>	<p>자 단말기에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영관, 상영 시간 및 좌석 등을 확정된 후 결제 처리부(60)를 통한 결제가 완료되면, 사용자 단말기에 예매번호를 포함하는 예매 완료 메시지를 전송"하여 예매 처리하는 단계</p>	
<p><b>(구성요소 6)</b>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p>	<p>대응 구성요소 없음</p>	
<p><b>(구성요소 7)</b>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및</p>	<p>"사용자 단말기에서는 포토 티켓 제작이 진행된다. 다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제작 완료된 포토 티켓의 등록 요청이 있으면, 포토 티켓 처리부(70)는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포토 티켓 정보를 사용자 정보 및 예매번호와 연계하여 포토 티켓 정보 DB(80-2)에 저장"하는 단계</p>	<p>동일</p>
<p><b>(구성요소 8)</b> (g)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예매된 티켓을 발행하는 소정의 발권기로부터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요청받으면, 이를 독출하여 상기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p>	<p>"사용자가 극장에 설치된 티켓 발매기에 예매번호를 입력하여 포토 티켓의 출력을 요청하면, 포토 티켓 처리부(70)는 포토 티켓 정보 DB(80-2)로부터 해당 예매번호에 대응하는 포토 티켓을 검색하여 티켓 발매기로 전송"하는 단계</p>	<p>동일</p>
<p><b>(구성요소 9)</b>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p>	<p>예매번호를 받은 후, 자신만의 포토 티켓을 제작하고 싶은 사용자는</p>	

<p>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하고,</p>	<p>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포토 티켓 응용프로그램(앱)을 실행시켜 포토 티켓을 제작한다. 포토 티켓을 제작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p>
<p><b>(구성요소 10)</b>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p>	<p>① ...(생략)...</p> <p>② 사용자가 예매한 영화 정보를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포토 티켓 제작을 진행한다.</p>
<p><b>(구성요소 11)</b>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 방법.</p>	<p>③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티켓의 사진 영역에 삽입한다.</p> <p>④ 티켓의 방향(가로/세로) 및 사진의 크기(크게/작게)를 선택한다. (도2 참조)</p> <p>⑤ 사진에 필터 효과나 스티커 편집 등을 가미한다. (도2 참조)</p> <p>⑥ 사진 영역을 '작게'로 선택한 경우 사진 아래의 텍스트 영역에 텍스트를 삽입한다.(도2 참조)</p> <p>이렇게 완성된 포토 티켓을 사용자 단말기가 예매번호와 함께 서버에 전송하면 서버는 예매번호와 포토 티켓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한다.</p>

## 2.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등 참조).

양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특허발명 청구항 1의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를 독출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대응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한편, 특허발명의 티켓 레이아웃 정보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비하여 그 정보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확인대상발명은 티켓 레이아웃 정보는 포토 티켓 응용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되므로, 저장형태와 제공방법의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런데 차이점 1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하면 '티켓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 내지 주제별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차이점 2를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3505 판결

변리사23년/변호사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